

「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17명

2. 제안이유

-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·정밀화·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4. 1. 9. ~ 1. 15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으로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,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ICT¹⁾ 및 4차산업 기술의 활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1) ICT :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며 정보를 수집·생산·가공·활용하는 모든 기술